

취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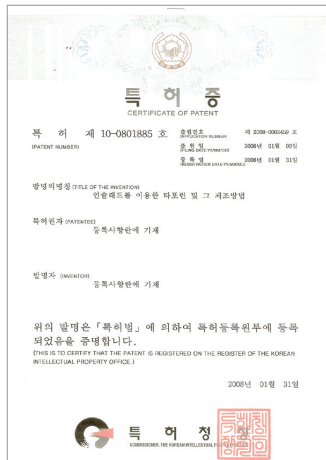
가금 및 오리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 제정

인슐레드 단열막(바이오커튼) 으로 저렴하게 마련하자!

특허난 (주)바이오맥 인슐레드 단열막 “바이오커튼 방역전실”

편집부





바이오커튼 특허증

바이오커튼
방역실

가금 및 오리농장에 전실 등 방역시설 의무화

최근 정부는 201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와 축산법 제22조 등을 개정하여 농장 출입구 대인(방역실)과 차량소독시설, 울타리 설치 및 축사입구에 전실과 새 그물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농가와 기업은 축산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을 확인하고, 미설치된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 등 주요 질병의 발생으로 가금생산농가들의 생산성 피해는 물론이고, 가금류 소비수요 또한 급격히 감소,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특히 2014년도 오리산업의 경우, 시 발생에 따른 생산과 수요의 감소 때문에 40% 이상 산업규모가 위축, 기존 1.4조에서 8~9천억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방역은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산업을 안정화하고 기업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일 것이다. 특히 향후 추가적으로 시가 발생할 경우, 가금산업과 농가 개별적으로도 경제적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염성 질병의 예방은 필수적이다.

질병은 다양한 전파체를 통해 유입될 수 있으며, 전파체와 가축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차단방역이다. 그러므로 농장주 자신뿐만 아니라 세척되지 않은 방문객, 출입차량, 쥐, 병에 걸리거나 오염된 난좌, 축사주변의 불완전한 세척 및 소독된 병원체 잠복, 야생조수의 직접 유입 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령의 개정 요지이자, 농장 내 질병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은 1차로 농장 경계의 차단시설과 농장입구 방역시설이고, 2차로 농장 내 방역과 축사입구의 방역시설(방역전실)을 갖추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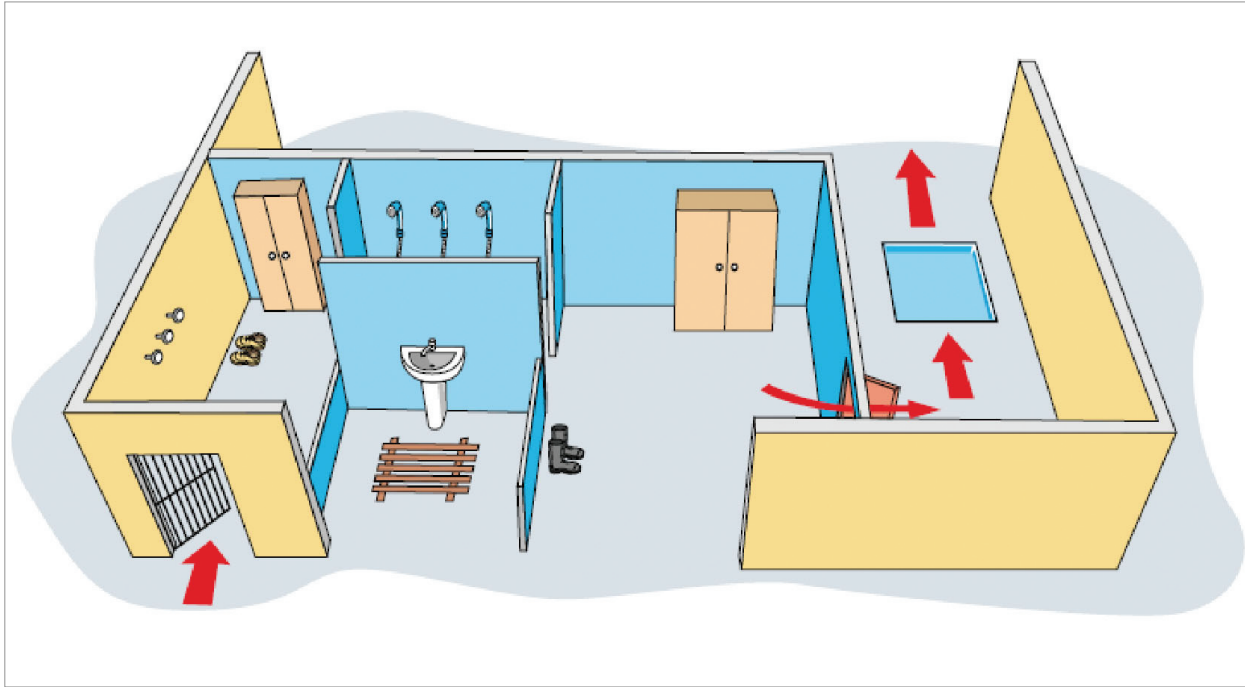
(주)바이오맥(대표 김홍중)에서 공급하는 방역실과 축사입구 전실에는 특허가 나 있는 인슐레드 단열막 “바이오커튼”을 사용하여 외벽을 구성, 저렴한 비용과 심플한 구조체를 갖춰, 앞서 언급한 방역시설로서 장점을 최대한 살렸으며, 더불어 단열과 방수가 이뤄져 사시사철 기후에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의 개정요지

1. 농장진입 차단시설

울타리 또는 담장을 비롯한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바와 같은 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농장진입 차단시설(축산법/축산업허가제)이다.

가. 울타리의 설치 : 사람과 차량의 농장출입경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장경



방역실 모식도

계에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한다.

나. 차단바(출입문)의 설치 : 일원화된 출입구에 차단시설(출입문)을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임의적인 출입을 차단한다.

다. 출입통제판의 설치 : 사람과 차량이 임의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방역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한다.

2. 농장출입구의 방역시설

축산차량 및 작업인원은 농장출입구를 통해서만 진입하고 지정된 방역시설을 반드시 통과한다.

가. 차량소독시설의 설치 : 농장출입구에 고정식 (또는 터널식)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한다.

나. 대인소독시설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다. 신발소독조와 방역실 설치 : 농장 출입 시 모든 사람은 신발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전용 장화로 갈아신어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라. 물품저장고 : 약품이나 기자재를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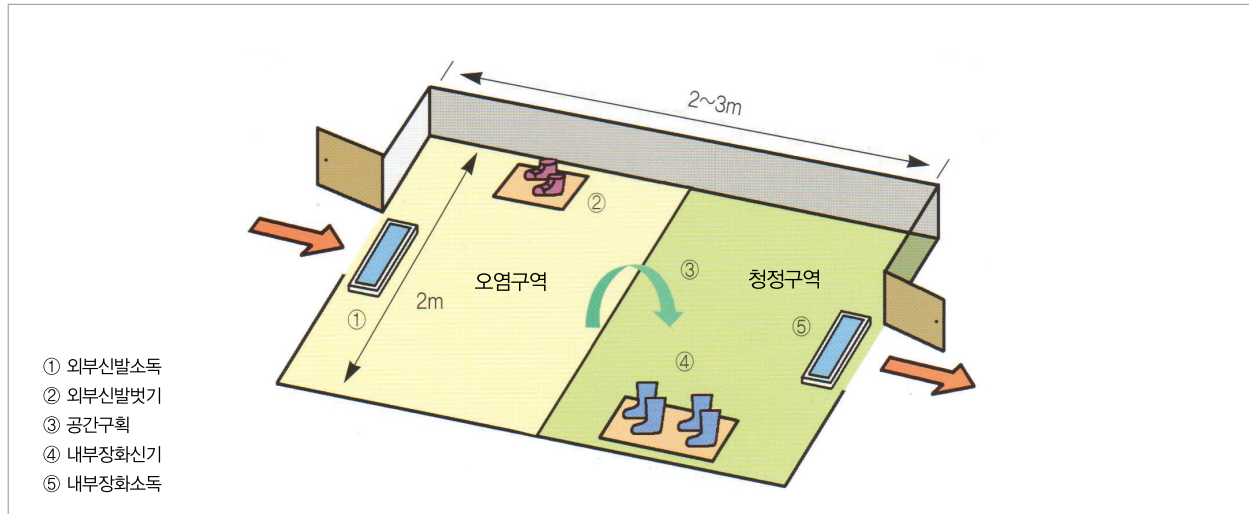
한다(축산법 제22조 및 축산업허가제).

※ 법령상 의무화된 농장출입구의 방역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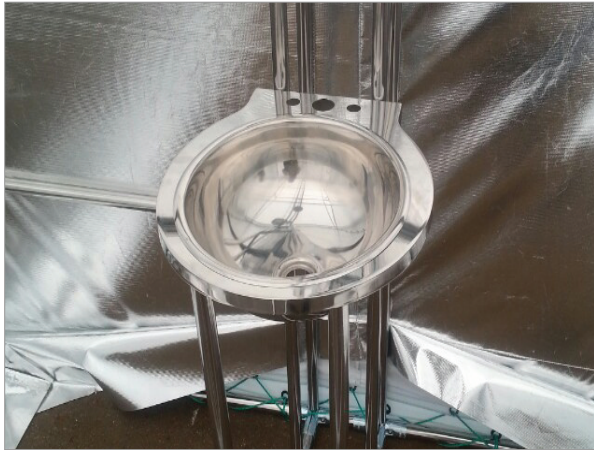
- 고정식 차량 소독시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300 ~ 1,000㎡ 소규모 사육농장의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 구비로 갈음 가능
- 옷 등을 소독하는 소독시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1,000㎡ 이상 사육농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 탈의실과 샤워장(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종축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 신발소독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물품반입창고(축산법 제22조 등) : 종축업의 경우 반입물품과 용기를 소독하는 시설 구비

※ 법령사항과 별도로 이 기준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

방역실(다. 항목 참조) : 기후에 영향없이 농장진입 전 신발소독과 장화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장소(건물, 컨테이너, 부스, 단열 천막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



전실



손을 씻는 새숫대야



온수를 공급하는 보일러 설비

3. 농장 내 차단방역시설

축사 내에는 필수작업 인원만 진입하며, 진입 시에는 지정된 축사전용 방역시설(전실)을 거쳐야 한다.

가. 신발소독조의 설치와 축사전실

- 모든 축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고 축사전용장화를 구비하여 신발을 교체·소독한다.
- 효과적인 출입자 방역을 위해 각 축사별 전실을 설치한다. 특히 이 전실을 바이오커튼으로 지어진 하우징을 활용할 경우 방역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실 내 시설물들



작업복 걸이대



여름철 단열막을 적용하기 전 차광막지붕 온도 측정(좌)과 단열막을 적용한 계사지붕 온도 측정(우)



겨울철 단열막(알린) 적용 전 유리창 표면온도 측정(좌)과 단열막(알린) 적용 후 표면온도 측정(우)

나. 새 그물망의 설치 : 새 그물망은 야생조류의 직접적 침입을 차단하고 저렴하게 설치하는 효과적인 방역시설이다.

다. 사료창고, 깔짚창고 등의 관리

라. 왕겨 설포기의 관리(오리축종의 경우)

마. 구서시설의 설치

바. 축사청결 관리

※ 법령상 의무화 된 농장 내 의무방역시설

-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 출입구에 신발소독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종축장의 경우 시설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2대 이상(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부화장의 경우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시설, 해충구제를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법령사항과 별도로 이 기준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

- 전실 : 기후에 영향없이 축사진입 전 신발소독과 장화교체가 가능하고, 축사외부 및 신발 등으로부터 물리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공간과 분리된 공간(축사 내부설, 컨테이너, 부스, 단열천막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

가금 및 오리농장들은 인슐레드 단열막(바이오커튼)으로 방역실을 마련하는 것이 방역에 최상이다

2015년부터 가금 및 오리농장들의 경우 농장입구 방역실과 축사입구 전실마련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방역실과 축사전실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해서 추울 때는 소독수가 얼어 소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차단 및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에 관습적으로 소독방역을 해오지 않다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농가들의 경우, 방역실 설치에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법규의 개정과 함께 특허난 단열재 인슐레드를 원료로 개발한 “바이오커튼” 재질의 콤팩트한 타입의 방역실과 전실의 경우, 겨울철 동파 또는 소독수가 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세척, 탈의 등을 할 때에도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않아서 차단방역 및 소독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기존 판넬구조나 컨테이너박스 방역실보다 경비측변에서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현장조립이 간편한 콤팩트타입이기 때문에 적극 구입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